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유공자 등 및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시설 확대 〉

■ 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15, 2206216, 2206217,
2206218, 2206219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개요	1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II . 검토의견: 국가유공자 등 및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시설 확대	7
※ 참고자료	27

I. 개요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1인
- 2) 제안일 : 2024. 12. 5.
- 3) 회부일 : 2024. 12.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제5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1인
- 2) 제안일 : 2024. 12. 5.
- 3) 회부일 : 2024. 12.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 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1인
- 2) 제안일 : 2024. 12. 5.
- 3) 회부일 : 2024. 12.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

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1인
- 2) 제안일 : 2024. 12. 5.
- 3) 회부일 : 2024. 12.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

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1인
- 2) 제안일 : 2024. 12. 5.
- 3) 회부일 : 2024. 12.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등).

☐ 5건의 개정안¹⁾은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이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중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의료기관”이라 함)을 포함하려는 것임.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② ~ ④ (생략)

⑤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
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
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
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⑥ · ⑦ (생략)

제51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
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
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는 국
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
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
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
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람에 대하여 보훈병원 또는 국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보훈병원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
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보훈
병원등”이라 한다)-----
--.

-----보훈병원등에-----
-----.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
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
에 대한 의료지원) -----

-----보훈병원등-----

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1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5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u>보훈병원</u>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u>보훈병원</u> 외의 의료기관에 제51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 ----- ----- ----- ----- -----. 제51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 ----- ----- ----- -----<u>보훈병원등</u>----- ----- ----- ----- -----<u>보훈병원등</u>----- ----- -----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34조(진료) ①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그 상이처(傷痍處)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제34조(진료) ① -----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훈병원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보훈병원등”이라 한다)-----.

---해당 보훈병원등에 지급할

1. ~ 3. (생략) ⑥·⑦ (생략)	<u>수 있다.</u> 1. ~ 3.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u>보훈병원</u>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u>보훈병원</u> 외의 의료기관에 제34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4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 ----- ----- ----- <u>보훈병원등</u>----- -----<u>보훈병원등</u>-----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33조(진료) ① 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조(진료) ① ----- ----- ----- -----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
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
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
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
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
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
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한
다.

-----보훈병원
(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
기관을-----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보훈병원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
기관(이하 “보훈병원등”이라 한
다)-----.

---해당 보훈병원등에 지급할

1. ~ 3. (생략) ⑥·⑦ (생략) 제33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u>보훈병원</u>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u>보훈병원</u> 외의 의료기관에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u>수 있다.</u> 1. ~ 3.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 ----- ----- ----- <u>보훈병원등</u>----- ----- -----<u>보훈병원등</u>-----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제42조(진료) ① ----- ----- ----- -----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훈병원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보훈병원등”이라 한다)-----.

1. ~ 3. (생략)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 4. (생략)

⑧ (생략)

제42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42조제5항

-----보훈병원등-----

-----.

1.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

-----보훈병원등-----

-----.

-----.

1. ~ 4.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보훈병원등-----

-----보훈병원등-----

[illegible]

제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

-----보훈병원등-----

현행	개정안
제17조(의료지원) ① (생략)	제17조(의료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독립유공자가 질병(부상을	② -----

포함한다)에 걸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③·④ (생략)

⑤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보훈병원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보훈병원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보훈병원등”이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⑦·⑧ (생략)	-----<u>보훈병원등이나</u>----- -----. ⑥ ----- ----- ----- -----<u>보훈병원등</u>----- ----- -----. ----- ----- -----. ⑦·⑧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²⁾은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상이유공자 본인과 독립유공자 본인은³⁾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위탁병원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유

2) 개정안이 발의된 5건의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의미함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제74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사람(전투종사군무원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공자와 유공자 등의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1] 대상별 의료지원 시설 이용 현황

구 분	대 상		국가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	보훈 병원	위탁 병원
보훈보상 대상자법	본 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	○
	유가족	배우자	×	○	×
		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배우자	×	○	○
5·18민주 유공자법	본 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	○
	유가족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	×
		배우자 또는 선순위 1명	×	○	×
특수임무 유공자법	본 인	특수임무부상자	△(×)*	○	○
	유가족	특수임무공로자	×	○	×
		배우자 또는 선순위 1명	×	○	×
국가유공자법	본 인	전공상군경 등 상이유공자 ⁵⁾	△(×)*	○	○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	○	○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등 ⁶⁾	×	○	×
	유가족	배우자 또는 선순위 1명	×	○	×
		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1명 ⁷⁾	×	○	○
독립유공자법	본 인	독립유공자(애국지사)	△(×)*	○	○
	유가족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	○	×
		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1명	×	○	○

*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시설이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진료를 받을 수 없음.⁸⁾

※ 개정안에 따르면, 음영 부분에서 대상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시설 이용 범위가 확대됨.

4)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진료를 위탁하거나 지정하여 위탁한 의료시설을 말함.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7)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포함

8)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부령) 제3조(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 ①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이하 “의료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 또는 다

○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이 있는 지역은 6곳에 불과하고, 위탁병원의 규모가 작아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에 대하여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표 2] 보훈병원 현황

(2024년 10월 기준)

병원명	지역	진료권역	전문의	병상수	진료과
중앙보훈병원	서울	서울, 경기, 인천, 강원	307	837	30
인천보훈병원	인천	부산, 울산, 경남, 제주	20	130	18
부산보훈병원	부산	광주, 전남, 전북	93	459	20
대구종합병원	대구	대구, 경북	87	448	21
대전보훈병원	대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55	363	20
광주보훈병원	광주	인천, 경기서부	64	494	22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표 3] 지역별 위탁병원 현황

(2025년 2월 1일 기준, 단위: 개)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부산	울산	경남	제주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의원	110	90	24	42	48	14	44	13	14	59	34	30	45	17	7	25	18
병원	12	21	2	8	8	1	18	2	1	17	7	2	12	1	-	6	7
종합병원	1	21	5	9*	-	3	8	3	-	10	6	-	9	-	-	7	5
계	123	132	31	59	56	18	70	18	15	86	47	32	66	18	7	38	30

*상급종합병원 1개 포함
 **요양병원(54개)은 제외된 수치임.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에 공공의료기관⁹⁾을 포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과 그

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하거나 지정하여 위탁한 의료시설·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에 의료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유족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려는 것임.

[표 4] 설립주체별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구분	국립	공립				군병원	의료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시도립	시군구립	지방의료원	기타				
전체	14	44	53	37	50	15	3	3	9
공공단체	2	-	-	37	44	-	-	-	8

자료: 보건복지부

[표 5]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별 현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개)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부산	울산	경남	제주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의원	1	-	-	-	1	-	-	-	1	-	-	-	-	-	-	-	1
병원	2	-	3	2	-	-	4	1	1	1	2	2	-	-	-	-	-
중·합의원	3	10	3	8	2	-	3	2	2	3	2	2	5	2	1	4	2
상·급·중·합의원	1	1	-	-	1	-	2	-	1	1	1	2	-	1	-	-	1
계	7	11	6	10	4	0	9	3	5	5	5	6	5	3	1	4	4

*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91개) 중 요양병원(3개)은 제외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 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1.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개정안에 따라 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이 진료받을 수 있는 시설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면,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를 다소 완화할 수 있고, 진료기관 분산효과를 통한 대기기간 감소와 함께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수 증가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유공자의 유가족(75세 이상 보상금 받는 선순위자 제외)은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없고,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이 실제 집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관계 기관들과의 사전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가족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확대되는 경우, 전체적인 진료 인원과 진료 횟수가 증가하여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진료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재원조달방안이 사전에 강구될 필요가 있음.

-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의 진료만 지원하는 현행 의료지원 체계에서도 국가가 부담하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용은 편성된 예산에 비하여 부족하여 대규모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므로, 개정안에 따라 확대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에 관하여 재정당국과의 사전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표 5] 최근 3개년 진료비용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예산액	집행액	이·전용등
2022	보훈병원 진료비	383,680	383,363	116
	위탁병원 진료비	250,404	247,332	-
2023	보훈병원 진료비	389,695	429,080	39,385
	위탁병원 진료비	265,043	272,987	7,946
2024	보훈병원 진료비	387,148	442,460	55,312
	위탁병원 진료비	253,932	290,747	36,819

자료: 국가보훈부

- 특히,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의료기관은 개소당·환자당 진료비 청구액이 높은 종합병원(59%), 상급종합병원(13%)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 산정 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6] 위탁병원 종별 진료비 현황

(2024년 8월 기준, 단위: 천원, 명)

구분	진료비	연인원	진료비용 예상액	
			개소당	환자당
종합병원	120,612,113	1,344,489	1,206,121	90
병원급	39,947,195	947,584	225,690	42
의원급	11,391,908	284,560	24,342	40

자료: 국가보훈부

- 둘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의료자원 조달 및 관리 방안,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계층·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 등 공공보

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바,¹⁰⁾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원활한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는 5건의 개정안 외 다른 법률¹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이들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7] 참전유공자 등의 의료지원 시설 현황

구 분	대 상		국가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	보훈 병원	위탁 병원
참전유공자법	본인	참전유공자	△(×)*	○	○
고엽제법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상이등급 미해당자)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	×

*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시설이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진료를 받을 수 없음.

1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축·관리 방안
5.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계층·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
6.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대응 방안
7.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이 포함되므로,¹²⁾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표 8] 체계·자구 수정의견¹³⁾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진료) ① ----- ----- ----- ----- ----- ----- ----- <u>-----국가의 의</u> <u>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u> <u>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u> <u>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u> <u>라 한다)과 「공공보건의료</u> <u>에 관한 법률」 제2조제3</u> <u>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u> <u>·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u> <u>관을</u> ----- ----- ----- ----- ----- -----.	제42조(진료) ① ----- ----- ----- ----- ----- ----- ----- <u>-----국가의 의</u> <u>료시설(「공공보건의료에</u> <u>관한 법률」 제2조제3호</u> <u>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u> <u>관 중 공공단체가 설립·</u> <u>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u> <u>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u> <u>단체의 의료시설에서</u> ----- ----- ----- ----- ----- -----.

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구 등을 말한다.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3) 5건의 개정안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만을 예시함.

□ 국가보훈부는, 유공자 등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필수 의료·중증 진료 확대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수정의견과 같이 문언이 수정된다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2

참 고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23.12.기준)¹⁴⁾

연번	요양기관명	요양종별	근거법령	시도명	설립구분	병상수
1	부산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부산광역시	공립(기타)	1,180
2	강원대학교병원	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강원특별자치도	공립(기타)	632
3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강원특별자치도	국립	15
4	충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충청북도	공립(기타)	804
5	충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대전광역시	공립(기타)	1,237
6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법인	408
7	전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전라북도	국립	1,157
8	전북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전라북도	공립(기타)	-
9	전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광주광역시	공립(기타)	1,078
10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전라남도	공립(기타)	684
11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광주광역시	공립(기타)	190
12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광주광역시	공립(기타)	14
13	경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대구광역시	특수법인	900
14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대구광역시	공립(기타)	945
15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대구광역시	공립(기타)	12
16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경상남도	공립(기타)	895
17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경상남도	공립(기타)	1,200
18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경상남도	공립(기타)	606
19	양산부산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경상남도	공립(기타)	36
20	양산부산대학교한방병원	한방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경상남도	공립(기타)	100
21	제주대학교병원	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주특별자치도	특수법인	655
22	국립중앙의료원	종합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특수법인	499
23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병원	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법	경기도	공립(기타)	850
24	인천적십자병원	종합병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인천광역시	공립(기타)	122
25	경인권역재활병원	병원	장애인복지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인천광역시	공립(기타)	120
26	상주적십자병원	종합병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경상북도	공립(기타)	205
27	영주적십자병원	종합병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경상북도	공립(기타)	150
28	통영적십자병원	병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경상남도	공립(기타)	99
29	거창적십자병원	병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경상남도	공립(기타)	91
30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종합병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서울특별시	공립(기타)	483
31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종합병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부산광역시	공립(기타)	225
32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서울특별시	공립(기타)	-
33	근로복지공단 부산의원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산광역시	공립(기타)	-
34	근로복지공단인산병원	종합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경기도	공립(기타)	380
35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종합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인천광역시	공립(기타)	334
36	근로복지공단경기도요양병원	요양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경기도	공립(기타)	140
37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종합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강원특별자치도	공립(기타)	247
38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종합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강원특별자치도	공립(기타)	259

14) 자료: 보건복지부

연번	요양기관명	요양종별	근거법령	시도명	설립구분	병상수
39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강원특별자치도	공립(기타)	165
40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종합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전광역시	공립(기타)	268
41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종합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라남도	공립(기타)	266
42	근로복지공단 광주의원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광주광역시	공립(기타)	-
43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구광역시	공립(기타)	200
44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종합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경상남도	특수법인	255
45	서울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특별시	공립(기타)	1,803
4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서울특별시	공립(기타)	40
47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서울특별시	공립(기타)	-
48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경기도	공립(기타)	1,335
49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립(지방의료원)	655
50	부산광역시의료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공립(지방의료원)	543
51	인천광역시의료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공립(지방의료원)	303
52	경기도의료원안정병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공립(지방의료원)	203
53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공립(지방의료원)	142
54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공립(지방의료원)	200
55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공립(지방의료원)	201
56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공립(지방의료원)	167
57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공립(지방의료원)	206
58	성남시의료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공립(지방의료원)	299
59	인천광역시의료원백령병원	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공립(지방의료원)	30
60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공립(지방의료원)	148
61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공립(지방의료원)	184
62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공립(지방의료원)	234
63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공립(지방의료원)	177
64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공립(지방의료원)	155
65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공립(지방의료원)	583
66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공립(지방의료원)	294
67	충청북도청주의료원부설한의원	한의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공립(지방의료원)	4
68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공립(지방의료원)	402
69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공립(지방의료원)	272

연번	요양기관명	요양종별	근거법령	시도명	설립구분	병상수
70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공립(지방의료원)	294
71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공립(지방의료원)	278
72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공립(지방의료원)	200
73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공립(지방의료원)	334
74	진안군의료원	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공립(지방의료원)	78
75	목포시의료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공립(지방의료원)	299
76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공립(지방의료원)	278
77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공립(지방의료원)	199
78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공립(지방의료원)	298
79	대구의료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공립(지방의료원)	446
80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공립(지방의료원)	246
81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공립(지방의료원)	296
82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공립(지방의료원)	298
8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공립(지방의료원)	278
84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공립(지방의료원)	200
85	제주의료원부속요양병원	요양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공립(지방의료원)	197
86	국립암센터	종합병원	암관리법	경기도	공립(기타)	550
8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인천광역시	특수법인	137
88	대전보훈병원	종합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대전광역시	특수법인	387
89	광주보훈병원	종합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광주광역시	공립(기타)	549
90	광주보훈요양병원	요양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광주광역시	공립(기타)	120
9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종합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대구광역시	특수법인	459

